

의대생의 해부 실습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및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- 한겨레 2월 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 주요내용

- 한겨레는 2월 9일 「 ‘주검 한 구로 20명이 해부실습’ 의대 수업 더블링 우려 현실화 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비수도권의 한 의대에서는 해부 실습을 주검 한구당 20명이 한 조로 참여하여 해부 실습 교육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설명 내용

-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9월 10일에 “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” 을 발표하였고, 이에 따라 「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시체해부법)은 의과대학별 카데바* 기증 편차로 인한 일부 대학의 해부학 실습 여건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자 개정(2025.11.11., 시행 2026.5.12.) 되었습니다.

* 해부 실습용 시체

- 기존 시체해부법에서는 시체 전부의 제공에 대해 기증받은 의과대학에서 타 의과대학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, 개정을 통하여 기증자 또는 유족이 동의하고 의학 전공 학생의 교육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타 의과대학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- 또한 보건복지부는 해부학적 연구 및 교육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「해부교육 지원센터*」로 선정하여 해부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* 가톨릭대학교,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('25.8월 공모 선정), '26년 수행기관 선정 예정

- 구체적으로 해부교육 지원센터는 기증자 대상 상담을 통해 해당 센터가 아닌 상대적으로 기증 사례가 적은 의과대학으로 기증자를 연계하고, 센터 내 실습실 및 교보재 등을 활용하여 타 의과대학 학생의 해부 실습 교육을 지원하며,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기증자·유족 동의 전제 하에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시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- 정부는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과 대학의 해부 실습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공공보건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소연 (044-202-2610)
		담당자	주무관	문서현 (044-202-2617)

